

# 예산총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23,181,810	15,695,454
일반회계	510,633,360	15,319,001
특별회계	12,548,450	376,454
기타특별회계	12,548,450	376,454
의료급여특별회계	649,380	19,481
지하수관리특별회계	1,799,057	53,972
주차장특별회계	8,198,660	245,960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838,683	25,160
재정비촉진특별회계	1,062,670	31,88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,543,89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7,100,000천원으로 한다.